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란의 규정 중 밑줄을 긋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각각 개정후란의 해당 부분과 같이 하며, 개정전란 및 개정후란에 표시한 표제부에 이중밑줄을 그은 규정(이하 "대상규정"이라 한다)은 그 표제부가 같으면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의 대상규정과 같이 하고, 그 표제부가 다르면 개정전란의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의 대상규정으로 이동시키며, 개정후란의 대상규정 중 개정전란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것을 신설한다.

개정후	개정전
<p>제2조(정의) [①·② 생략] ③ 이 법에서 "화약류"란 다음 각 호의 화약, 폭약 및 화공품(火工品: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 [1.·2. 생략] 3. 화공품 [가.~자. 생략] <u>차.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</u></p> <p>[카. 생략] [④~⑦ 생략]</p>	<p>제2조(정의) [왼쪽과 같음] ③ [왼쪽과 같음]</p> <p>[왼쪽과 같음] 3. [왼쪽과 같음] [왼쪽과 같음] <u>차.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</u></p> <p>[왼쪽과 같음] [왼쪽과 같음]</p>
<p>제3조(적용의 배제) ① [생략] ②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<u>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</u>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</p>	<p>제3조(적용의 배제) ① [왼쪽과 같음] ②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<u>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</u>에 대해서는 제4조,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</p>

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,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③·④ 생략]

제11조(모의총포 등의 제조·판매·소지의 금지) ① [생략]

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·신체·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·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) ① [생략]

적용하지 아니한다.

[왼쪽과 같음]

제11조(모의총포의 제조·판매·소지의 금지) ① [왼쪽과 같음]

[제2항을 신설함]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) ① [왼쪽과 같음]

② 건설공사·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·가스발사총·마취총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(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"폭발물 분쇄용 총포"라 한다), 분사기 또는 전자총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·가스발사총·마취총, 폭발물분쇄용 총포, 분사기 또는 전자총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[③~⑤ 생략]

제13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

② 건설공사·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·가스발사총·마취총·분사기 또는 전자총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·가스발사총·마취총·분사기 또는 전자총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[왼쪽과 같음]

제13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) ① [왼쪽과 같음]

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.

[1.~6. 생략]

6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[가.~다. 생략]

[6의3. 7. 생략]

[②·③ 생략]

제20조(총포·화약류의 폐기)

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해당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총포를 폐기하여야 한다.

③ [생략]

④ [생략]

⑤ [생략]

제22조(교육의 실시) ① 총포(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석궁의

[왼쪽과 같음]

6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[왼쪽과 같음]

[왼쪽과 같음]

[왼쪽과 같음]

제20조(화약류의 폐기)

[제1항을 신설함]

[제2항을 신설함]

① [왼쪽과 같음]

② [왼쪽과 같음]

③ [왼쪽과 같음]

제22조(교육의 실시) ① 총포(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)·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

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(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)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·석공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[1.~3. 생략]

② [생략]

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·제4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·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총포·석공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사람(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)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·석공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[왼쪽과 같음]

② [왼쪽과 같음]

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·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총포(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)·석공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

⑤ 총포·석공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.

1.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: 제1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

2. 석공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: 5년마다. 다만,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공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.

⑥ 제1항,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총포·석공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총포·석공의 소지 또는 수렵과 관련하여 제1항, 제4항 또는 제5항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35조(도난·분실의 신고 등)

①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

아야 한다. 다만, 제5항의 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총포(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)·석공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5년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[제2호를 신설함]

[제2호를 신설함]

[제6항을 신설함]

제35조(도난·분실의 신고) 총포

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

기·전자충격기·석공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경찰청장·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(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총포 도난·분실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난·분실자가 도난·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.

④ 허가관청 또는 지방경찰청장·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·분실 총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

자충격기·석공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할 수 있다.

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허가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.

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, 보관 및 반환 절차,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(출입·검사 등) [①~③ 생략]

④ 총포의 제조업자·판매업자·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제조·판매·임대 또는 수출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총포의 수량·종류·제조번호 등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6조(총포 등의 소지허가를

제44조(출입·검사 등) [왼쪽과 같음]

[제4항을 신설함]

제46조(총포 등의 소지허가를

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)

① 허가관청은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공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(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)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산업용총·가스발사총·마취총, 폭발물분쇄용 총포, 분사기 또는 전자총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.

[1.~4. 생략]

[②~⑦ 생략]

제7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(권총·소총·

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)

① 허가관청은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공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(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)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산업용총·가스발사총·분사기 또는 전자총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.

[왼쪽과 같음]

[왼쪽과 같음]

제7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

기관총, 포, 엽총, 공기총만 해당한다)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

2. 총포(권총, 소총, 기관총, 포, 엽총, 공기총만 해당한다)에 관하여 제4조제1항, 제3항, 제6조제1항, 제2항,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

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제70조의2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(권총, 소총, 기관총, 포, 엽총, 공기총은

고 제조된 총포, 도검, 화약류, 분사기, 전자총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

2. 제4조제1항, 제3항(총포, 화약류만 해당한다), 제6조제1항(총포, 화약류만 해당한다), 제2항(총포, 화약류만 해당한다),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(총포, 화약류만 해당한다), 제2항(산업용총, 가스발사총만 해당한다)을 위반한 자

②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4조제1항, 제3항, 제6조제1항, 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③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[제70조의2를 신설함]

제외한다)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 또는 석공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

2. 총포(권총·소총·기관총·포·엽총·공기총은 제외한다)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·제3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·제2항을 위반한 자

3. 제12조제3항(총포만 해당한다)을 위반한 자

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제70조의3(상습범)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제7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4조제2항·제3항(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공만 해당한다), 제6조제1항(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공만 해당한다)·제2항(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공만 해당한다), 제6조의2제1항·제2항,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(도검·분사기·전자충

[제70조의3을 신설함]

제71조(벌칙) [왼쪽과 같음]

1. 제4조제2항·제3항(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공만 해당한다), 제6조제1항(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공만 해당한다)·제2항(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공만 해당한다), 제6조의2제1항·제2항,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(도검·분사기·전자충

격기·석공만 해당한다)·제2항(분사기·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)·제3항(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공만 해당한다)을 위반한 자
[1의2.·2.~8. 생략]

제7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[생략]
1의2.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·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·유포한 사람
[2.·3. 생략]
3의2.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
[4.~7. 생략]

제7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4조의2제3항(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1조 제1항·제2항, 제17조제2항·제4항,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·제2항을 위반한

격기·석공만 해당한다)·제2항(분사기·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)을 위반한 자

[왼쪽과 같음]

제72조(벌칙) [왼쪽과 같음]

1. [왼쪽과 같음]
[제1호의2를 신설함]

[왼쪽과 같음]
[제3호의2를 신설함]

[왼쪽과 같음]

제73조(벌칙) [왼쪽과 같음]

1. 제4조의2제3항(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1조 제1항, 제17조제2항·제4항,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·제2항을 위반한 자

자

1의2.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한 자

2.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

3. [생략]

4. 제26조제1항, 제35조제1항(총포만 해당한다)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

제7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9조제5항, 제11조제3항, 제20조제3항, 제27조제2항, 제35조제1항(총포는 제외한다)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

3. 제20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

4. [생략]

5. 제32조제2항,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·제4항에

1의2.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·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·유포한 사람

2.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

3. [왼쪽과 같음]

4.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

제74조(과태료) ① [왼쪽과 같음]

1. 제9조제5항, 제11조제2항, 제20조제1항, 제27조제2항, 제35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

2. [왼쪽과 같음]

3. 제20조제2항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

4. [왼쪽과 같음]

5. 제32조제2항,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

다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
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

6. [생략]

② [생략]

제75조(형의 병과) 제70조, 제70조의2, 제70조의3,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.

제76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, 제70조의2, 제70조의3,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

6. [왼쪽과 같음]

② [왼쪽과 같음]

제75조(형의 병과)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.

제76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비고] 표 중에서 []안의 표시 및 대상규정의 전체(이중밑줄을 친 표제부를 제외한다)에 친 밑줄은 주석임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공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도난·분실 총포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난·분실된 총포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모의총포 등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·판매·소지가 금지되는 것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제3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차.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

제3조제2항 중 "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"를 "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"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중 "모의총포"를 "모의총포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단서"를 "단서 및 제2항 단서"로, "모의총포"를 "모의총포 등을"로 한다.

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·신체·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·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제2항 전단 중 "종업원이 산업용총·가스발사총·마취총·분사기"를 "종업원이 산업용총·가스발사총·마취총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(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"폭발물 분쇄용 총포"라 한다), 분사기"로, "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·가스발사총·마취총·분사기"를 "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·가스발사총·마취총, 폭발물분쇄용 총포, 분사기"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"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"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"(화약류의 폐기)"를 "(총포·화약류의 폐기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해당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총포를 폐기하여야 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해당한다"를 "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"을 "제1항·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총포(엽총 및 공기총에

한정한다)"를 "총포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총포(엽총 및 공기총에 한정한다)"를 "총포"로, "5년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"을 "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: 제1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

2. 석공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: 5년마다. 다만,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공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.

⑥ 제1항,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총포·석공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총포·석공의 소지 또는 수렵과 관련하여 제1항, 제4항 또는 제5항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35조의 제목 중 "신고"를 "신고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방경찰청장·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(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총포 도난·분실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난·분실자가 도난·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.

④ 허가관청 또는 지방경찰청장·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·분실 총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.

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허가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

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.

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, 보관 및 반환 절차,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총포의 제조업자·판매업자·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제조·판매·임대 또는 수출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총포의 수량·종류·제조번호 등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분사기"를 "마취총, 폭발물 분쇄용 총포, 분사기"로 한다.

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(권총·소총·기관총·포·엽총·공기총만 해당한다)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

2. 총포(권총·소총·기관총·포·엽총·공기총만 해당한다)에 관하여 제4조제1항·제3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

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0조의2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(권총·소총·기관총·포·엽총·공기총은 제외한다)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총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

2. 총포(권총·소총·기관총·포·엽총·공기총은 제외한다)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·제3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·제2항을 위반한 자

3. 제12조제3항(총포만 해당한다)을 위반한 자

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제70조의3(상습범)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제71조제1호 중 "해당한다)을"을 "해당한다)·제3항(도검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궁만 해당한다)을"로 한다.

제72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·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·유포한 사람

3의2.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

제73조제1호 중 "제11조제1항"을 "제11조제1항·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제20조제3항"을 "제20조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제26조제1항"을 "제26조제1항, 제35조제1항(총포만 해당한다)"으로 한다.

1의2.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한 자

제74조제1항제1호 중 "제11조제2항, 제20조제1항"을 "제11조제3항, 제20조제3항"으로, "제35조"를 "제35조제1항(총포는 제외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제20조제2항"을 "제20조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제44조제3항"을 "제44조제3항·제4항"으로 한다.

제75조 중 "제70조부터 제73조"를 "제70조, 제70조의2, 제70조의3, 제71조부터 제73조"로 한다.

제76조 본문 중 "제70조부터 제73조"를 "제70조, 제70조의2, 제70조의3, 제71조부터 제73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공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도난·분실 총포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난·분실된 총포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모의총포 등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·판매·소지가 금지되는 것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